

2026. 5.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완도군 결산검사위원회**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완도군수

2025회계연도 완도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6년 4월 8일 ~ 4월 27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최 정 욱
- 검 사 위 원 : 김 시 현
- 검 사 위 원 : 문 형 응
- 검 사 위 원 : 차 재 철
- 검 사 위 원 : 문 경 선
- 검 사 위 원 : 전 호 용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 【 목 차 】

## ○ 결산검사 의견서

I. 결산검사 경과 .....	2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5
1. 완도군 재정의 개황 .....	6
2. 세입·세출 결산 .....	8
가. 총괄	
나. 일반회계	
(1) 세입	
(2) 세출	
다. 특별회계	
(1) 세입	
(2) 세출	
라. 명시·사고·계속비이월	
3. 기금의 결산 .....	17
4. 재무제표의 결산 .....	18
5. 성과보고서 .....	2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2
가. 채권	
나. 채무	
다. 공유재산	
라. 물품	
III. 개선 및 권고사항 .....	24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완도군수 귀하

2026년 4월 27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도군의회로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6년 4월 8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완도군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완도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완도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별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기금,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은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대표감사위원 최 정 욱 (인)

감사위원 김 시 현 (인)

감사위원 문 형 웅 (인)

감사위원 차 재 철 (인)

감사위원 문 경 선 (인)

감사위원 전 호 용 (인)

# I. 결산검사 경과

#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6. 4. 8. ~ 4. 27.(2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최정욱	• 세입·세출 결산 검사 총괄	
검사위원	김시현	• 재무제표, 첨부서류 검사 • 분식결산 검사 • 보조금 집행 결산검사	
검사위원	문형웅	• 출자·출연기관 검사 • 기금 결산 검사 • 재정연건, 재정건전성 검사	
검사위원	차재철	•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검사 • 부채·채권·채무 검사 • 금고검사	
검사위원	문경선	• 계약관련(수의계약) 결산검사 • 예산편성 및 성과보고서 검사	
검사위원	전호용	• 이용·전용·이체 검사 • 공유재산·물품관리 검사	
공통사항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산검사 내용	비고
결산검사	'26. 4. 8. ~ '26. 4. 27.	• 계산의 과오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심사 •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심사 • 성인지결산서, 기금결산서 등 첨부서류 심사	
의견서 작성	'26. 4. 24. ~ '26. 4. 27.	• 위원 간 토의 및 의견서 작성	

## 4. 결산검사 진행

### 가. 결산총괄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지방금고의 계산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서 일치 여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예비비의 과목별 집행내용의 일치 여부
- 전년도 결산심의 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촉구사항의 이행 여부

### 나. 세입결산

- 세입결산 사항 및 각 내역별 세입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징수현황
- 각종 기금관리의 효율성
- 예산액 추계의 적정성 등

### 다. 세출결산

- 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예산 운용의 효율성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내역
- 각종 이월예산의 타당성
- 민간보조금의 적정지원 및 집행여부
- 각종 공사집행의 타당성
- 기금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의 타당성 등

### 라. 기타

- 채권, 채무관리의 적정성
- 공유재산 증감 및 관리의 적정성
- 각종 지출 증빙서류의 이행사항
-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 등

##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완도군 재정의 개황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회계	세입	727,018,998	852,060,581	839,152,777	825,348,790	866,005,228
	세출	592,642,419	681,647,523	647,784,222	672,416,700	699,608,018
	결산상 잉여금	134,376,579	170,413,058	191,368,555	152,932,090	166,397,210
특별회계	세입	34,583,881	36,953,672	33,694,834	28,666,712	34,596,452
	세출	24,038,484	22,401,469	26,324,912	26,123,746	27,737,165
	결산상 잉여금	10,545,397	14,552,203	7,369,922	2,542,966	6,859,287
기 금	수입	13,007,320	51,670,483	76,832,417	44,709,780	77,717,258
	지출	7,952,803	16,327,763	40,056,815	272,463	10,393,468
	결산상 잉여금	17,522,416	35,342,720	36,775,602	44,437,316	67,323,790
총 계	세입(수입)	774,610,199	940,684,736	949,680,028	898,725,282	978,318,938
	세출(지출)	624,633,706	720,376,755	714,165,949	698,812,909	737,738,651
	결산상 잉여금	162,444,392	220,307,981	235,514,079	199,912,371	240,580,287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0.1% 높고, 잉여금의 경우 평균 4.6%로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5년	2,017,952	57,301	1,960,651	685,332	710,297	24,965	
2024년	2,024,136	42,085	1,982,051	629,906	651,001	21,069	
증감	(6,184)	15,216	(21,400)	55,426	59,296	△3,869	

- 2025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1,400백만원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1.1%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869백만원(18.34%) 증가함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지난 3년간 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065,827	100	2,024,136	100	2,017,952	100
유동자산 <sup>1)</sup>	246,882	11.95	212,885	10.52	203,903	10.10
투자자산 <sup>2)</sup>	5,234	0.25	5,273	0.26	5,234	0.26
일반유형자산 <sup>3)</sup>	129,511	6.27	128,369	6.34	135,770	6.73
주민편의시설 <sup>4)</sup>	339,186	16.42	340,280	16.81	341,185	16.91
사회기반시설 <sup>5)</sup>	1,344,184	65.07	1,335,698	65.99	1,325,713	65.70
기타비유동자산 <sup>6)</sup>	829	0.04	1,631	0.08	6,148	0.30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960,65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00백만원(1.1%) 감소
- 총자산은 2,017,95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4백만원(0.3%) 감소함.

## 2. 세입·세출 결산

### 가. 총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 계	915,022,632	900,601,680	727,345,183	173,256,497
일 반 회 계	880,918,057	866,005,228	699,608,018	166,397,210
특 별 회 계	34,104,575	34,596,452	27,737,165	6,859,287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0	42,415,329	4,850,982	105,421,918	11,103,032	7,710,887
일 반 회 계	0	40,853,307	4,800,559	100,859,046	11,102,532	7,027,418
특 별 회 계	0	1,562,022	50,423	4,562,872	500	683,469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0,601,680천원으로 예산현액 915,022,632천원보다 14,420,952천원이 덜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약 81%인 727,345,183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73,256,497천원이며,
- 이 중 명시이월비 42,415,329천원, 사고이월비 4,850,982천원, 계속비 105,421,918천원, 보조금 반납금 11,103,03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710,887천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 나. 일반회계

### (1) 세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결산액	880,918,057	870,179,962	866,005,228	252,233	3,922,501
결산확인액	880,918,057	870,179,962	866,005,228	252,233	3,922,501
차액	0	0	0	0	0

- 수납액 866,005,228천원은 예산현액의 99.24%로서 6,339,614천원이 덜 수납 되었다.
- 주요 세입요인은 예산대비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등 등으로 확인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66,005,228	866,005,228	0

-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징수 결정액 대비 결손 처분액
2025	880,918,057	870,179,962	866,005,228	252,233	98.8	99.5	0.03
2024	831,688,404	830,083,706	825,348,790	1,150,405	99.8	99.4	0.14
증감	49,229,653	40,096,256	40,656,438	▽898,172	-	-	-

- 수납액은 전년도 825,348,790천원 보다 40,656,438천원이 증가한 866,005,228천원이며,
-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1,150,405천원 보다 898,172천원이 감소한 252,233천원이고,
-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행방불명 85,990천원, 무재산 58,222천원, 기타 108,021천원 등임.

##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880,918,057	870,179,962	866,005,228	252,233	3,922,501
지방세	소 계	26,245,369	27,543,506	26,159,997	245,474	1,138,034
	주민세	560,000	627,936	583,543	2,139	42,253
	재산세	2,900,000	3,174,216	3,026,442	4,550	143,224
	자동차세	5,700,000	6,202,121	5,751,898	6,244	443,979
	담배소비세	4,300,000	4,418,919	4,418,908	-	10
	지방소비세	7,285,369	6,941,748	6,941,748	-	-
	지방소득세	4,900,000	5,060,434	4,845,718	29,659	185,058
	지난연도수입	600,000	1,118,132	591,740	202,882	323,510
세외 수입	소 계	30,231,250	33,325,267	30,534,042	6,759	2,784,467
	재산임대수입	77,916	191,585	182,899	-	8,686
	사용료수입	1,473,398	3,646,373	3,612,788	618	32,967
	수수료수입	2,131,322	2,776,788	2,770,651	-	6,137
	사업수입	28,415	37,341	37,340	-	-
	징수교부금	536,637	588,334	588,334	-	-
	이자수입	4,084,138	4,681,563	4,680,828	-	735
	재산매각수입	131,770	133,662	133,662	-	-
	보조금반환수입	1,271,195	3,646,571	3,627,223	-	19,347
	기타수입	18,319,329	13,894,047	13,527,380	-	366,667
	지난연도수입	909,398	2,507,648	417,247	6,141	2,084,262
	과징금	15,500	26,962	5,400	-	21,562
	이행강제금	75,000	212,572	113,507	-	99,065
	변상금	-	7,674	7,451	-	223
	과태료	228,915	263,365	171,061	-	92,304
	환수금	358,545	491,850	439,338	-	52,512
	부담금	589,772	218,933	218,933	-	-
범칙금	-	-	-	-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지방교부세	306,748,649	301,382,903	301,382,903	-	-
조정교부금등	14,167,000	14,637,886	14,637,886	-	-
보조금	308,293,916	300,668,917	300,668,917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5,231,873	192,621,483	192,621,483	-	-

- 지난해 전체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3.02%(26,159,997천원), 세외수입이 3.53%(30,534,042천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34.80%인 301,382,903천원, 조정교부금등은 1.69%인 14,637,886천원, 보조금은 34.72%인 300,668,91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24%인 192,621,483천원이 수납되었다.

## (2) 세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급 반납액	집행잔액
결산액	759,219,398	880,918,057	699,608,018	146,512,911	11,102,532	23,694,596
결산확인액	759,219,398	880,918,057	699,608,018	146,512,911	11,102,532	23,694,596
차액	0	0	0	0	0	0

- 지난해 예산액은 759,219,39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1,698,65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80,918,057천원이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42%에 해당하는 699,608,018천원이었다.
- 전체이월액은 146,512,912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0,853,307천원, 사고이월액은 4,800,559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00,859,046천원이었다. 주된 이월액 발생사유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9%에 해당되는 23,694,596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예산전용은 38건 903,890천원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및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 예비비 사용액은 2,579,416천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용 되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99,608,018	699,608,018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4 회계연도 지출액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 액	비 율
합 계	672,416,700	880,918,057	699,608,018	79.42%	27,191,318	4.04%
일반공공행정	64,227,477	86,391,436	69,859,334	80.86%	5,631,858	8.77%
공공질서및안전	9,218,582	9,570,397	6,443,983	67.33%	▽2,774,599	▽30.10%
교 육	4,264,049	4,253,233	4,089,930	96.16%	▽174,119	▽4.08%
문화및관광	43,086,392	71,557,636	44,714,169	62.49%	1,627,777	3.78%
환경보호	50,252,646	82,507,297	54,597,280	66.17%	4,344,634	8.65%
사회복지	139,279,875	150,826,115	142,364,744	94.39%	3,084,869	2.21%
보 건	13,954,436	18,777,767	13,974,166	74.42%	19,730	0.14%
농림해양수산	181,750,733	222,897,204	164,853,189	73.96%	▽16,897,544	▽9.30%
산업·중소기업	10,998,190	38,567,688	34,676,547	89.91%	23,678,357	215.29%
교통및물류	25,616,141	31,425,196	25,979,771	82.67%	363,630	1.42%
국토및지역개발	46,591,057	73,956,956	51,176,412	69.20%	4,585,355	9.84%
예비비 및 기타	83,177,123	90,184,132	86,878,493	96.33%	3,701,370	4.45%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64,853,189천원, 사회복지 142,364,744천원, 예비비 및 기타 86,878,493천원, 일반공공행정 69,859,334천원, 환경보호 54,597,280천원 순이다.
- 전년대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23,678,357천원이며, 전년 대비 215.29%가 증가하였다.

## 다. 특별회계

### (1)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 합계	31,172,891	34,965,313	34,596,452	-	368,8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948,893	32,821,405	32,452,544	-	368,861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116,176	116,757	116,757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94	47	47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919,726	919,726	-	-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055,728	1,055,378	1,055,378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000	52,000	52,000	-	-
결산확인액	31,172,891	34,965,313	34,596,452	-	368,861
차액	0	0	0	0	0

- 특별회계 수납액은 34,596,452천원으로 예산현액 31,172,891천원의 110.98%를 수납하였으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5%이고,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8,861천원이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4,596,452	34,596,452	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2) 세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특별회계 합계</b>	<b>31,948,461</b>	<b>34,104,575</b>	<b>27,737,165</b>	<b>6,175,317</b>	<b>27,231</b>	<b>164,862</b>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948,893	31,958,220	25,818,607	6,124,894	-	14,719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116,176	116,176	-	-	-	116,17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47	47	-	-	-	4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22,404	922,404	894,363	-	26,731	1,310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	908,941	1,055,728	972,195	50,423	500	32,6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000	52,000	52,000	-	-	-
<b>결산확인액</b>	<b>31,948,461</b>	<b>34,104,575</b>	<b>27,737,165</b>	<b>6,175,317</b>	<b>27,231</b>	<b>164,862</b>
차액	0	0	0	0	0	0

- 예산액은 31,948,461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2,156,114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104,575천원이었고, 예산의 전용 1건 1,500천원이며, 이용·이체·예비비의 사용은 없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33%에 해당하는 27,737,165천원이며, 이월액은 6,175,317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562,02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0,423천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4,562,872천원이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8%에 해당되는 164,862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의 사유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7,737,165	27,737,165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 본 연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는 다음과 같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결산>

(단위 : 천원)

회계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비 고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합 계	289	152,688,229	153	42,415,329	33	4,850,982	103	105,421,918	
일반회계	281	146,512,912	150	40,853,307	31	4,800,559	100	100,859,04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	6,124,894	3	1,562,022	-	-	3	4,562,872	
농공단지 특별회계	2	50,423	-	-	2	50,423	-	-	

- 검사결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0건 40,853,307천원, 사고이월은 31건 4,800,559천원, 계속비는 100건 100,859,046천원임이 확인되었고,
-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3건 1,562,022천원, 계속비 3건 4,562,872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 농공단지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건 50,423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3. 기금의 결산

○ 2025회계연도 완도군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4,437,316	22,886,474	33,279,942	10,393,469	67,323,789
옥외광고정비기금	210,924	▽116,286	102,642	218,928	94,638
식품진흥기금	111,436	▽14,844	3,853	18,697	96,592
재난관리기금	1,603,193	71,605	728,071	656,467	1,674,797
생활폐기물처리 시설기금	20,434,375	605,020	605,020		21,039,3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계정)	11,695,344	21,345,778	30,532,979	9,187,200	33,041,123
청사신축기금	8,996,965	168,476	168,476		9,165,440
고향사랑기금	1,385,079	743,268	1,055,444	312,177	2,128,347
공유재산관리기금		83,457	83,457		83,457

- 지난해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4,437,316천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3,279,942천원을 더하고 당해사용액 10,393,469천원을 제외한 67,323,789천원이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2,467,899	24,622,416	67,464,988	36,775,602	44,437,316	37.4%
당해연도 조성액	13,007,320	51,670,483	9,367,428	7,934,178	33,279,942	26.5%
당해연도 사용액	7,952,803	16,327,763	40,056,815	272,464	10,393,468	6.9%
당해연도말 조성액	17,522,416	59,965,136	36,775,602	44,437,316	67,323,790	40%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평균 26.5% 증가하였으며, 사용액 또한 증가하였다.
- 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40% 증가하였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 2025회계연도 완도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다.

### <재 정 상 태 표>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증감	
			금 액	비 율
<b>자 산</b>	<b>2,024,136,066</b>	<b>2,017,951,905</b>	<b>▽6,184,161</b>	<b>▽0.31%</b>
Ⅰ. 유동자산	212,884,540	203,902,508	▽8,982,032	▽4.22%
Ⅱ. 투자자산	5,272,856	5,234,446	▽38,410	▽0.73%
Ⅲ. 일반유형자산	128,369,220	135,769,630	7,400,410	5.76%
Ⅳ. 주민편의시설	340,280,409	341,184,892	904,483	0.27%
Ⅴ. 사회기반시설	1,335,697,586	1,325,712,587	▽9,984,999	▽0.75%
Ⅵ. 기타비유동자산	1,631,454	6,147,842	4,516,388	276.83%
<b>부 채</b>	<b>42,085,134</b>	<b>57,300,756</b>	<b>15,215,622</b>	<b>36.15%</b>
Ⅰ. 유동부채	25,171,156	30,950,802	5,779,646	22.96%
Ⅱ. 장기채입부채	0	0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16,913,978	26,349,954	9,435,976	55.79%
<b>순자산</b>	<b>1,982,050,932</b>	<b>1,960,651,147</b>	<b>▽21,399,785</b>	<b>▽1.08%</b>
Ⅰ. 고정순자산	1,799,604,382	1,799,291,295	▽313,087	▽0.02%
Ⅱ. 특정순자산	44,707,472	37,095,926	▽7,611,546	▽17.03%
Ⅲ. 일반순자산	137,739,079	124,263,926	▽13,475,153	▽9.78%

- 지난해 말 자산은 2,017,951,905천원으로 전년도 2,024,136,066천원 보다 6,184,161천원 감소하였다.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증가는 자산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유동부채 증가와 고정·특정·일반 순자산 감소는 자산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재 정 운 영 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5					2024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I.사업순원가	591686798	310047418	281639381	-	281639381	536,721,433	266,800,421	269,921,012	0	269,921,012
II.관리운영비	0	0	119961493	(23138908)	96822585	0	0	102,707,622	(16,486,385)	86,221,238
III.비배분비용	0	0	21787392		21787392	0	0	28,058,578	0	28,058,578
IV.비배분수익	0	0	27896220		27896220	0	0	23,275,146	0	23,275,146
V.재정운영순원가 ( I+II+III-IV)	0	0	395,492,046	(23,138,908)	372,353,138	0	0	377,412,066	(16,486,385)	360,925,681
VI.일반수익	0	0	370,527,063	(23,138,908)	347,388,155	0	0	356,316,415	(16,486,385)	339,830,030
<b>VII재정운영결과 (V-VI)</b>	0	0	24,964,983		24,964,983	0	0	21,095,651	0	21,095,651

※ 재정운영결과(VII=V-VI)가 괄호()로 표시되면 흑자임

-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5회계연도 완도군의 사업순원가는 281,639,381천원이고, 관리운영비 96,822,585천원, 비배분비용 21,787,392천원, 비배분수익 27,896,220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72,353,138천원이다.
-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47,388,155천원을 차감한 2025회계연도 완도군의 재정운영결과는 24,964,983천원이다.

## 5. 성과보고서

- 완도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완도군은 본 회계연도의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27개)-정책사업목표(120개)-단위사업(24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달성 지표수 (B)	미달성 지표수	달성률 (B/A)*100
계	27	120	240	98	110	40.8%
기 획 예 산 실	1	3	8	7	1	87.5%
인구일자리정책실	1	10	16	6	10	37.5%
관 광 실	1	4	8	0	8	0.0%
해양치유담당관	1	3	7	1	6	14.3%
행 정 지 원 과	1	2	7	6	1	85.7%
세 무 회 계 과	1	3	5	4	1	80.0%
민 원 봉 사 과	1	4	7	0	0	0.0%
주 민 복 지 과	1	10	21	15	6	71.4%
가 족 행 복 과	1	5	10	1	5	10.0%
경 제 교 통 과	1	8	9	1	1	11.1%
관 광 과	1	0	0	0	0	0.0%
문 화 예 술 과	1	5	9	4	4	44.4%
체 육 진 흥 과	1	3	6	0	6	0.0%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달성 지표수 (B)	미달성 지표수	달성률 (B/A)*100
농업축산과	1	3	9	0	0	0.0%
해양정책과	1	8	24	1	23	4.2%
수산경영과	1	4	9	4	5	44.4%
해조류박람회추진단	1	2	2	2	0	100%
산림휴양과	1	5	7	5	2	71.4%
환경수질관리과	1	7	14	8	6	57.1%
지역개발과	1	3	7	4	3	57.1%
건설과	1	7	11	1	6	9.1%
안전총괄과	1	5	11	9	2	81.8%
기술담당관	1	7	15	12	3	80.0%
보건행정과	1	2	4	0	4	0.0%
건강증진과	1	2	7	5	2	71.4%
시설관리사업소	1	3	5	2	3	40.0%
의회사무과	1	2	2	0	2	0.0%

○ 완도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전체 240개 지표 중 88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40.8%이다.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가. 채권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029,954	0	38,410	3,991,544
일반회계	2,177,592	0	38,410	2,139,182
특별회계	1,852,362	0	0	1,852,362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91,544천원으로 확인됨.

### 나. 채무

○ 검사결과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공유재산

○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993,267,159	23,270,409	6,979,216	1,009,558,352	
행정 재산	소계	932,042,831	22,605,678	819,886	953,828,624
	공용재산	284,469,083	17,502,645	290,946	301,680,782
	공공용재산	646,512,609	4,814,373	528,939	650,798,043
	보존용재산	1,061,138	288,660	0	1,349,799
일반재산	61,224,327	664,731	6,159,331	55,729,728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291,193천원이 증가한 1,009,558,352천원이 확인되었다.

## 라. 물품

-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
		취득	처분	
수 량	1,295	51	0	1,346
금 액	10,158,323	860,369	0	11,018,692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860,369천원이 증가한 11,018,692천원이 확인되었다.

###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1.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및 보조금 집행 소홀 ..	1
2. 완도해양치유센터 행정재산 및 사업관리 미흡 .....	3
3. 예비비 사용 부적정 .....	7
4. 국도비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미흡 .....	8
5. 주요 사업 추진 지연 .....	9
6. 완도청해진유적(목교개축)사업 추진 철저 .....	11
7.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철저 .....	12
8.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14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미흡 .....	16
10. 완도군 금고관리 소홀 .....	18
11. 사회기반시설과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여부 오류 .....	21
12. 단기대여금 회수 가능성 및 계정 분류 적정성 여부 .....	23
1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 및 당기설정액 적정성 여부	24
14. 재정상태표와 순자산변동표간 기말 순자산 차이발생 ....	26
15. 무형자산 계정과목 적정성 여부 .....	27
16. 장기투자증권과 재정상태 표 간 세부내역간 차이 발생	28

# 1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및 보조금 집행 소홀

(소관부서 : 기획예산실, 전부서)

## □ 현황

<2025년 지방보조사업 표본검사 현황>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합 계	재 원 별		자 부 담	비 고
		국 비	지 방 비		
'2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	20,000	-	
'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20,000	-	16,000	4,000	
'25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50,000	15,000	15,000	20,000	
'25년 수산물 공동저온 저장시설 지원사업	1,000,000	800,000	-	200,000	

## □ 지적사항

- 완도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개정하여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 보조를 50%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 표본 검사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특정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조례 개정 전이라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조치계획

### << 기획예산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조례 개정 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이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임
- 또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관리·운영 매뉴얼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립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 관련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강화하겠음.

### << 행정지원과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 교부 조치
- 보조금 교부 완료한 보조사업의 교부조건 일제 점검 추진 및 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시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 인구일자리정책실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지방계약법령」절차 이행 명시.

## << 경제교통과 >>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가 계약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철저.
-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자체 교육 실시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
-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 << 해양정책과 >>

- 보조를 50%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 표본 검사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음.
- 아울러,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하여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안내 하겠음.

## << 환경수질관리과 >>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 << 지역개발과 >>

- 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확히 명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사전교육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음.

## 2 완도해양치유센터 행정재산 및 사업관리 미흡

(소관부서 : 해양치유담당관)

### □ 현황

(단위/천원)

해양치유시설명	토지 면적 (㎡)	건축 면적 (㎡)	2025년 예산 현황		비고
			수입	지출	
계	21,501	2,068.29	1,986,114	4,035,326	
완도해양치유센터	16,465	1,445.64	1,965,477		국비지원
기후치유센터	5,036	345.6	12,931		"
문화치유센터		277.05	7,706		"

### □ 개선 및 권고사항

- 검사일 현재 완도해양치유센터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관련 세입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세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인한 동법 제22조에 의한 사용료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제27조제3항에 의한 위탁료 세입입니다. 2번째 세입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공단조례”라 한다)제19조 1호~4호 근거 공단에서 해양치유산업 사업 경영으로 인한 수입입니다.
- 그런데, 검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 첫째, 행정재산인 완도해양치유시설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수와 공단 간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조 제4항에는 동법 제20조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단은 허가받은 시설내 일부사업시설(해양치유센터 퀴진식당, 해양치유센터 카페, 해양치유센터 로컬푸드점)에 대하여는 특정인에게 동 법령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위법성이 있어 보여 행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동법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과 용도(「보조금법」과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1호 및 「공단조례」 제19조에 의한 목적과 용도) 장애 여부, 「공유재산법」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 요율 등이 적법 한지 여부 등 위법성\*\***

- 둘째, 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 되었고, 「공단조례」제19조에는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시행할 사업을 정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특정 사업(해양치유센터 퀴진식당, 해양치유센터 카페, 해양치유센터 로컬푸드점)을 경영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관계로 「공단조례」제19조 3호에 의한 사업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군 세입이 없어 행정조사가 필요 상태입니다.

**\*\*사업수입 감소로 완도해양치유산업과 법인(공단)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 셋째, 완도군수와 공단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을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동법 시행령」제19조제2항 전단규정에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완도군수와 공단 간 위·수탁계약서 제7조 계약기간에는 만료일을 “군”과 “공단”의 별도의 해약 의사표시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동법 시행령」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계약 갱신 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아 추후 완도군수는 관리 위탁한 완도해양치유시설 부실관리 여부를 평가할 수 없음으로 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넷째, 「공단조례」제19조에서는 공단의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는 제19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군 세입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사업 경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공단조례」제19조 사업에 따른 수입)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당해 공단 세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 공단의 모든 수입금을 완도군에 입금하면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공단은 완도군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법인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 따라서, 공단(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공단은 완도군 보조금이 없으면 공단은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자생력이 없어 완도군에 의지하고 있음에도, 완도군에서는 공단이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할까 우려 되어, 공단과 완도군, 의회와 군수 간 오해와 불신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 다섯째, 「공단조례」 제24조 관련 위법성 문제입니다.
  - 「공단조례」제19조 1항과 2항 관련 사업은 「공유재산법」에는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매년 위탁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고,
  - 법령에는 「공단조례」제19조 3호와 4호 관련 공단에서 직접 사업경영에 따른 수입을 완도군 세입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법」에는 매년 위탁료를 세입 조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에서 완도해양치유산업 사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익을 공단 세입으로 하도록 「공단조례」등을 개정 조치함으로써,
    -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과 제21조의 재량행사 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 공단에서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공단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단 임직원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더불어,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한 책임(법인의 해산, 직원 해임·감원·급여 삭감 등)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제와 유인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때로는 용인도 필요합니다.**

## □ 조치계획

### << 해양치유담당관 >>

- 완도해양치유센터 행정재산 및 사업 관리 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군 소유의 해양치유 관련 시설을 공단이 관리·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관리위탁의 성격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군의 시설 운영 사업을 수행하며, 군은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상 대행 사업 구조'를 함께 가지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관리위탁 법리상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고, 관리 경비를 정산하는 별개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사료는 되나, 완도군은 공유재산 관리위탁의 측면에 더하여 지방공기업법상 공단 대행사업 구조를 병행하고 있고, 이를 조례, 정관, 계약을 통해 군 귀속형 구조를 명시적으로 갖추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상 다른 정산방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현행 운영구조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 법률검토 의견서를 덧붙여 완도해양치유센터의 행정재산 및 사업 관리 미흡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음.

### ③ 예비비 사용 부적정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관광실, 행정지원과)

#### □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관리	550,000	-	550,000	-	
관광실	관광객유치	16,500	8,680	-	7,820	
행정지원과	시책행정추진	21,824	20,514	-	1,310	

※ 지출잔액이 천만원이하 부서는 제외

#### □ 지적사항

-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원으로써 국가유산관리 외 26건 3,158,45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579,416천원을 지출하고 550,0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03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다음년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표와 같이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재적 제약을 준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이나 과다한 지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함.

## □ 조치계획

### << 관광실 >>

- 관광객 유치사업 예비비의 과도한 지출잔액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집행 전 내부 심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 목적과 금액 확인 과정을 강화해서 예비비가 계획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음.

### << 행정지원과 >>

- 예비비 사용 시 예비비 집행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추진하겠음.

### << 문화예술과 >>

- 청해진 목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철거공사 및 개축공사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현재 철거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철거공사 계약 및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7월 중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개축공사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개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음.
- 향후 예비비 사용 시 사업기간, 행정절차,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이월 및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4 국도비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미흡

(소관부서 : 전 부서)

### □ 현황

#### <202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보조금 수령액	집 행 액	이 월액	집행잔액
계	306,202,711	300,668,917	245,323,677	49,581,620	10,700,879
국비	228,186,974	223,402,401	192,732,844	28,840,837	6,583,034
도비	78,015,737	77,266,516	52,590,833	20,740,783	4,117,845

### □ 문제점

- 국도비 보조금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확정시 세입총괄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징수부에 기재한 후 보조금 입금 시 재원별로 정리하여 해당실과에 입금내역을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매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하기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만하나 보조금 수령액 대비 80%인 245,323백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60,282백만원은 이월 또는 반납할 계획임.
- 금후 확보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입금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등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보조금 집행지연 또는 미집행등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 보조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조치계획

### << 기획예산실 >>

- 2025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규모 약 3,062억원대비 2,453억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9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 495억원 집행잔액은 107억원이 발생하였음.
-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지연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 규모 축소 및 사업 배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확보된 예산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도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 인구일자리정책실 >>

- 보조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국도비 보조금 적극 집행하겠음.
- 보조금 반환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 독려하겠음.

### << 행정지원과 >>

- 국도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추진 일정과 세부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으며,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 << 경제교통과 >>

- 국·도비 보조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수시 관리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입금내역을 재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행 누락 방지.
- 보조사업 신청 전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자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지연 및 집행잔액 최소화 추진하겠음.
-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여 이월 및 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집행 부진으로 인한 차년도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 해양정책과 >>

- 보조금 입금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사용에 누락이 없게 하겠음.
- 국비 등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환경수질관리과과 >>

-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지역개발과 >>

- 사업별 보조금 입금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사업 신청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 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또한 사업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건설과 >>

-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을 통하여 이월 및 반납액을 최소화 하겠음.

## << 농업기술센터 >>

-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5 주요 사업 추진 지연

(소관부서 : 농업축산과)

### □ 현황

(단위:백만원)

공 사 명	구 분	총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비 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합 계	7,000	4,482	57	2,518	
	시 설 비	4,570	3,095	68	1,475	
	민간경상 보 조	2,270	1,275	56	995	
	연구용역비	150	109	73	41	
	사무관리비	10	2.6	26	7.4	

### □ 문제점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농촌자원,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사업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임.
- 민간 경상보조사업은 민간조직인 추진단을 구성하여 거점센터 운영 외 8개유형 15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있으나, 민간추진단의 전문성 부족등으로 일부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민간 경상보조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다수로 민간추진단 자체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이므로 세부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추진단 자체 추진 가능 사업과 전문용역업체 용역의뢰 사업으로 구분하여, 본사업이 사업 기간 내 내실 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권고함.

## 【분야별 사업내용】

구분	유형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계 (①+②+③+④)				7,000	4,900	2,100
농촌치유 산업기반 구성	1. 농촌치유산업거점센터 조성		'25-'26	4,450	3,115	1,335
	H/W	농촌치유산업거점센터 조성	'24-'26	4,230	2,961	1,269
	S/W	농촌치유산업거점센터 시범운영	'26	220	154	66
	2. 거점연계형 농촌치유체험마을 육성		'25-'26	50	35	15
	S/W	거점연계형 농촌치유체험마을 육성	'24-'26	50	35	15
	소계 ①			4,500	3,150	1,350
농촌치유 산업 활성화	3. 농촌치유산업콘텐츠 강화		'23-'26	340	238	102
	S/W	농촌치유스토리텔링콘텐츠·브랜드개발	'23	30	21	9
	S/W	농촌치유푸드 R&D	'24-'26	150	105	45
	S/W	농촌치유 자연소재 상품개발	'25	120	84	36
	S/W	농촌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25	40	28	12
	4. 농촌치유산업 활성화		'23-'26	620	434	186
	S/W	농촌치유축제 활성화	'25-'26	100	70	30
	S/W	주민참여농촌치유산업 비즈니스모델구축	'24-'26	80	56	24
	S/W	농촌치유산업 통합홍보마케팅	'23-'26	440	308	132
	소계 ②			960	672	288
농촌치유 산업 인재육성	5. 농촌치유산업 추진체계 구축		'23-'26	380	266	114
	S/W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23-'26	250	175	75
	Hu/W	참여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3-'25	60	42	18
	S/W	사업활성화 컨설팅 및 모니터링	'23-'25	40	28	12
	S/W	농촌치유산업 포럼 및 워크숍	'23	30	21	9
	6. 농촌치유산업 추진주체 역량강화		'23-'26	660	462	198
	Hu/W	완도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23-'25	240	168	72
	S/W	액션그룹 조직화 및 네트워크	'24-'26	100	70	30
	S/W	액션그룹 경쟁력강화 지원	'23-'26	320	224	96
	소계 ③			1,040	728	312
부대비	7. 부대비			500	350	150
	S/W	기본계획, 실시설계, 인준비, 감리비 등	'23-'26	500	350	150
	소계 ④			500	350	150

## □ 조치계획

### << 농업축산과 >>

- 현재 민간조직(추진단)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본 사업 내역중 SW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추진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추진단 자체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별도 전문용역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세부사업 집행액 조정 및 일정관리를 강화하여 금년내 사업을 내실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6 완도청해진유적(목교개축)사업 추진 철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 □ 현황

(단위: 천원)

공 사 명	재 원 별					원인 행위	집행액	이월액
	합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예비 비			
완도청해진 유적 목교 개축공사	3,678,572	1,700,000	1,171,428	257,144	550,000	542,000	-	3,136,572

### □ 문제점

- 완도 청해진 유적(목교 개축공사) 사업은 2025. 9. 청해진 목교 정밀 안전 점검결과 D급으로 시설물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청해진 유적 목교 철거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550백만원을 사용 승인 받음.
- 예비비 사용승인 후 실시설계용역계약을 하지 못한 채 예비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다음 해인 26년도 실시설계 용역과업 지시서에 국가유산청의 사업 세부지침에 해수에 강한 재질로 설계하도록 하는 과업내용이 누락됨.

###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시설의 재질(합성목재)은 해수에 취약하므로 목교 개축에 따른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변경 해수에 강한 재질로 설계하여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 시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업기간은 국가유산청 승인 완료 시까지 하여 본사업이 원만하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권고함.
- 현 목교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철거 시 잔해가 현장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철거 후 폐기물처리장의 입,출고 확인서를 제출받아 타장소에 무단 방치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람.

## □ 조치계획

### << 문화예술과 >>

- 청해진 목교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시 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해수에 강한 재질로 설계를 하고 국가유산청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 승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 청해진 목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장에 잔존하지 않도록 즉시 반출·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출고 확인서 및 처리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타 장소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우리 군 대표 역사관광지인 청해진 목교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및 개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7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 · 관리 철저

(소관부서 : 기획예산실, 관광실,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환경수질관리과, 안전총괄과)

### □ 현황

【표1】 기금설치 운용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4년도 말 현재액	25년도 기금 운용계획		25년도 말 현재액	증감
		수입	지출		
옥외광고 정비기금	210,924	102,642	218,928	94,638	-116,286
식품진흥기금	114,436	3,853	18,697	96,592	-14,844
재난관리기금	1,603,193	728,071	656,467	1,674,797	71,60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20,434,375	605,020		21,039,395	605,02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11,695,344	328,144	9,187,200	2,836,288	-8,859,057
청사신축기금	8,996,964	168,476		9,165,440	168,476
고향사랑기금	1,385,079	1,055,444	312,177	2,128,347	743,268

## □ 지적사항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을 위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수 자금으로써 소요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바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 하고 있음.
- 옥외 광고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수입은 소액의 예치금 이자와 기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옥외광고기금은 세입처리가 불명확하는 등 당해 기금 목적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고향사랑기금은 사업발굴 및 홍보 미흡.
- 청사 신축기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등 일부 기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의무 출연금 미확보.

## □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부 기금은 장기간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고유 목적 사업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순수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에서 정한 의무기금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초과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람.

## □ 조치계획

### << 기획예산실 >>

- 우리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8개 기금이며, 이중 법정의무 및 재량기금은 6개, 자체기금 2개로 운용 중에 있음.
- 자체기금으로 운용 중인 2개 기금의 2025년 현재 예치금은 일반회계로 전액 예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는 교부세 규모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가용재원 축소로 법정의무 조성액을 예산편성하지 못했음.
- 향후, 법정의무 조성액을 확보하여 해당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유사·중복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폐지 또는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향상토록 하겠음.

### << 환경수질관리과 >>

-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여유자금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겠음.

### << 관광실 >>

-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 정기예치 공공이자 수입으로 조성함.
- 2026년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손님용 앞치마를 전체 일반음식점에 구입·배부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함.
-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구입, 시설 개선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예산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안전총괄과 >>

-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고유 목적사업의 맞게 여유자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전입금 및 의무예치금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8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소관부서 : 전 부서)

### □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합계	56,476,619,000	60,868,772,929	56,694,039,194	3,922,501,155	93.1%
지방세	26,245,369,000	27,543,505,650	26,159,997,040	1,138,034,570	94.9%
세외수입	30,231,250,000	33,325,267,279	30,534,042,154	2,784,466,585	91.6%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60,869백만원, 수납액 56,69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3.1%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 3,922백만원이 발생 함.
- 특히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결정액은 33,235백만원 이며 이중 30,534백만원을 징수하고 2,784백만원의 미수납액 발생.

### □ 부서별 현황 : 붙임

###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행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권한이 실과소장으로 되어있어 부과후 방치사례가 많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사전 금융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일소대책 추진반을 편성 하여 징수독려할 것을 권고함.

□ 실과소별

(단위: 원)

실과소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비고
합계	283,529,888,000	380,951,450,329	397,944,431,242	8,991,501,345	
인구일자리정책실	9,901,501,000	6,258,780,740	6,250,980,740	7,800,000	
해양치유담당관	7,633,190,000	6,069,751,497	6,052,519,557	17,231,940	
관광실	6,431,530,000	6,565,569,750	6,521,800,460	43,769,290	
행정지원과	670,400,000	832,604,920	792,741,120	39,863,800	
세무회계과	86,388,801,000	208,087,459,686	207,601,910,704	1,829,474,570	
민원봉사과	1,597,290,000	2,506,495,610	1,699,695,369	806,800,241	
경제교통과	25,370,579,000	26,431,823,874	25,437,912,730	993,380,144	
문화예술과	5,399,784,000	7,011,754,530	7,002,828,590	10,507,180	
체육진흥과	3,477,708,000	4,762,125,170	4,752,281,430	9,843,740	
농업축산과	19,505,648,000	18,562,696,390	18,547,701,190	14,995,200	
해양정책과	22,843,757,000	21,318,228,900	21,297,803,860	19,807,040	
수산경영과	22,098,283,000	2,208,291,800	22,061,107,920	44,236,070	
환경수질과	27,556,878,000	21,824,703,330	21,786,936,980	37,766,35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948,893,000	32,821,404,682	32,452,544,142	368,860,540	

※미수납액 :5,000,000원 이상

## □ 조치계획

### << 행정지원과 >>

- 세외수입 체납 2건
  -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액 환수분(37,043,340원)
  - 징계부가금(2,500,000원)
- 납부자에 대한 납부 독려 지속 실시(독촉장 발송 등)
- 납세 태만 시, 재산 가압류 등 조치 예정
  - 재산조회, 압류 예고, 재산압류(체납처분), 재산 공매 등

### << 경제교통과 >>

-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체납 안내를 지속 실시, 체납 원인별 분석을 통한 체계적 징수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및 압류 등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채권 확보 철저
- 체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부과 단계부터 납부기한 안내 및 수납 여부를 지속 관리하여 미수납액 최소화 추진

### << 해양정책과 >>

- 현행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권한이 실과소장으로 되어있어 부과 후 방치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 금융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음.

### << 인구일자리정책실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규정 준용한 체납액 징수 적극 독려.
-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방법으로 미수납액 최소화.

### << 지역개발과 >>

- 세외수입 부과 전 납부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액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여 적극 징수하겠음

## << 환경수질관리과 >>

- 회수불가능한 미회수액(행방불명, 무재산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음.
-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지사과 연계하여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회수액은 단수 및 계량기 회수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행정을 추진하겠음.

## << 농업기술센터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미흡

(소관부서 : 수산경영과)

### □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설립 연도	설립 목적	근 거	주요 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주)화신산업 개발	2003	대도시권 판로개척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상법288조	생산어민과의 직거래대도시 판로개척	1,950,000	487,000 (24.3%)
(재)장보고 장학회	2007	지역인재 육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인재육성장학금 및 미래교육 지원사업등	14,320,000	14,320,000 (100%)
완도전복 주식회사	2009	산지유통 구조개선	법률 제14196호	유통,가공	8,895,000	2,950,000 (33.2%)
행복복지재단	2015	복지사회 구현	민법32조	복지기금조성, 취약계층지원	6,000,000	5,000,000 (83.33%)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조직 위원회	2012	해조류 박람회 준비운영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해조류박람회 준비운영	50,000	50,000 (100%)
완도 해양치유 관리공단	2024	해양치유 산업발전을 통한지역 경제활성화기여등	지방공기업 제76조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해양치유시설 관리및운영 해양치유관광 시설관리 및 운영등	100,000	100,000 (100%)

## ○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 : 원)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비 고
계	계	3,437,000,000	
완도전복주식회사	2017	2,950,000,000	
(주)화신산업개발	2003	487,000,000	

## □ 검사 의견

- 완도군의 2025년 회계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확인한 결과,
- 완도군은 2003년도 설립한 (주)화신산업개발의 최대주주로 24.9%의 지분을 투자하였으나 당초부터 주주명부상 완도군이 아닌 타인명의(개인 김종식)로 등재되어 완도군은 현재까지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그동안 (주)화신산업개발 운영 및 자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참석 및 주주배당을 받지 못해 세입손실이 발생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완도군은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인(김종식)명의 주식을 완도군 소유로 명의변경 하도록 권고함.

## □ 조치계획

### << 수산경영과 >>

- 완도군에서 출자한 화신산업개발(주)의 주주명의를 완도군이 아닌 타인명의(전임 군수 김종식)로 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수차례 주식명의 변경 요청하였으나,
- 주식명의 변경 불응에 따라 주주명부 변경청구 소송 추진 중으로, 주식명의 변경 후 주식처분 등 출자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10 **완도군 금고 관리 소홀**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 완도군 금고 지정 현황

- 금고지정 : NH농협은행 완도군 지부
- 자금관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기금 관리 : 목적 및 특성별로 별도 은행 지정 관리 가능
- 약정기간 : 2025. 1. 1 - 2028. 12. 31

### □ 회계별 자금 관리 현황 : 붙임(2025. 12. 31기준)

### □ 근 거

- 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체,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고 있음.
- 완도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6조(세입금 관리) 및 완도군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제6조(수납처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해당계좌에 세입조치하고, 세입금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세입금(월~금요일)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이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9조(이자계산 및 지급)제2항에 따라 군금고는 제8조제2항의 경우 계약 담당자가 요구한 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는 군금고가 취급하는 예금 종목에 의한 계산방법과 상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 (매월 지급가능한 것은 매월 지급일)에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지적사항

- 완도군에서는 2024. 1. 1부터 2024. 12. 31 기간동안 수납된 2024년 세입금에 대하여 2025년 금고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세입금 12건을 다음주 화요일 지난 후에 완도군 세입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24년 1.1부터 2024.12.31. 기간동안 예치된 정기예금의만 기일과 해지일을 대조한 결과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등 6건의 정기예금이 만기일 경과 후 해지된 사실도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 완도군 금고 검사시 수납 일계를 면밀히 검사하고 필요 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고관리 및 자금운용 할 것을 권고함.

## □ 조치계획

### << 세무회계과 >>

- 「지방회계법」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및 「완도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3조(금고검사)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금고 운영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 상대방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완도군 금고 검사 시 수납 일계를 면밀히 검사하고, 필요시 수시로 검사하여 세입금이 지연처리 되거나 정기예금이 만기일 경과 후 해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고관리 및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음.

## 회계별 자금현황(2025. 12. 31.)기준

(단위 : 원)

회계구분	예금종류	금액	비고
일반회계	정기예금	150,000,000,000	
	공금예금	11,175,900,690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116,757,410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금예금	82,835,680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4,256,677,432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46,760	
의료보호특별회계	공금예금	14,622,760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	3,703,752,677	
환경개선부담금	공금예금	15,695,390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84,105,290	
	보통예금	10,532,578	
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2,836,287,860	
	보통예금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1,003,926,340	
	보통예금	691,551,154	
고향사랑기금(적립)	보통예금	93,413,350	
고향사랑기금(운용)	공금예금	218,250,531	
고향사랑기금	정기예금	1,300,000,000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76,468,502	
	공금예금	20,213,4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정기예금	21,057,580,923	
	보통예금	173,0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보통예금	428,470	
청사신축기금	보통예금	100,620	
자활기금(적립)	보통예금	2,540,334	
<b>합 계</b>		<b>202,640,852,207</b>	

# 11 사회기반시설과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여부 오류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 현 황

### (1) 재무제표 요약

- 2025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1,400백만 원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1.1%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869백만원 (18.3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5년	2,017,952	57,301	1,960,651	685,332	710,297	24,965	
2024년	2,204,136	42,085	1,982,051	629,906	651,001	21,096	
증 감	(6,184)	15,216	(21,400)	55,426	59,296	△3,869	

### (2) 재무제표 분석

-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960,651백만원, 전년 대비 21,400백만원(1.1%)감소
- 총 자산은 2,017,95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4백만원(0.3%) 감소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증가하였으나, 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로 인함.)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065,827	100.00	2,024,136	100.00	2,017,952	100.00
유동자산	246,882	11.95	212,885	10.52	203,903	10.10
투자자산	5,234	0.25	5,273	0.26	5,234	0.26
일반유형자산	129,511	6.27	128,369	6.34	135,770	6.73
주민편의시설	339,186	16.42	340,280	16.81	341,185	16.91
사회기반시설	1,344,184	65.07	1,335,698	65.99	1,325,713	65.70
기타비유동자산	829	0.04	1,631	0.08	6,148	0.30

- 총수익은 685,33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426백만 원(8.8%)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감소로 인한 총수익 감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640,488	100.00	629,906	100.00	685,332	100.00
자체조달수익	43,568	6.80	55,179	8.76	58,808	8.58
정부간이전수익	590,314	92.17	573,136	90.99	620,948	90.61
기 타 수 익	6,605	1.03	1,590	0.25	5,576	0.81

## □ 검사 의견

- 사회기반시설은 감소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은 증가 하였으나 증감이 반대로 표시되어 있으며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이 증가 하였으나 감소로 표시되어 있음. 단순기재 오류로 보이나 사회기반시설은 총자산의 65.7%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 있는 자산으로 이러한 오류는 왜곡된 정보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완도군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정되어야 함.

## □ 조치계획

### << 세무회계과 >>

- 사회기반시설 감소, 기타비유동자산 증가 기재오류로 수정하겠음.
-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증가 기재오류로 수정하겠음.

## 12 단기대여금 회수 가능성 및 계정 분류 적정성 여부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 현 황

(단위 : 천원)

과목	해당연도(2025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단기대여금	100,488	506,714	21,039,395	0	(21,039,395)	607,201,915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1,005)	(5,067)	0	0	0	(6,072,025)
과목	직전연도(2024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단기대여금	100,488	506,714	0	0	0	607,201,915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1,005)	(5,067)	0	0	0	(6,072,025)

### □ 검사 의견

- 단기대여금은 회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을 의미하며 회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대여금으로 계정 대체가 이루어져야 함. 2024년과 2025년말 재정상태표상 단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동일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금액의 동일성 측면에서 회수 활동의 정체 및 계정 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단기대여금은 민간융자금으로 회수활동의 정체 및 계정 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겠음.

# 1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 및 당기설정액 적정성 여부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 현 황

<재정상태표>

(단위 : 천원)

과 목	해당연도(2025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기타비유동 부 채	26,349,954	0	0	0	0	26,349,954
퇴직급여충당 부 채	18,314,786	0	0	0	0	18,314,786
기타비유동 부 채	8,035,168	0	0	0	0	8,035,168
과 목	직전연도(2024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기타비유동 부 채	16,913,978	0	0	0	0	16,913,978
퇴직급여충당 부 채	11,970,436	0	0	0	0	11,970,436
기타비유동 부 채	4,943,542	0	0	0	0	4,943,542

<재정운영표>

(단위 : 천원)

과목	해당연도(2025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인건비	0	0	94,147,256	0	94,147,256
급여	0	0	51,209,768	0	51,209,768
복리후생비	0	0	17,830,108	0	17,830,108
기타인건비	0	0	17,326,104	0	17,326,104
퇴직급여	0	0	7,781,278	0	7,781,278

<퇴직급여총당부채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설정대상인원수(명)	322	0	0	0	322
전년도말퇴직금추계액(A)	12,883,558	0	0	0	12,883,558
당기 퇴직금지급액(B)	1,418,307	0	0	0	1,418,307
당기 퇴직급여설정액(C)	8,217,655	0	0	0	8,217,655
차감 :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1,368,120)	0	0	0	(1,368,120)
계(A-B+C)	19,682,906	0	0	0	19,682,906
차감잔액	18,314,786	0	0	0	18,314,786

□ 검사 의견

- 당기 퇴직급여설정액이 약82억 원으로 전년도말 추계액 대비 퇴직급여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며 퇴직급여총당부채 기말잔액(약183억 원)의 산출 근거 확인이 필요함. 또한 재정운영표상 퇴직급여 금액과 퇴직급여총당부채의 세부내역 중 당기퇴직급여 설정액의 금액이 동일하도록 수정해야 함.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재정운영표상 퇴직급여 금액, 퇴직급여총당부채 세부내역 중 당기퇴직급여 설정액의 금액 동일 수정하겠음.

# 14 재정상태표와 순자산변동표간 기말 순자산 차이 발생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 현 황

### <재정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순자산	115,191,206	9,072,721		0	124,263,926
일반순자산	115,191,206	9,072,721		0	124,263,926
(순자산총계)	1,796,415,861	120,272,635	43,962,653	0	1,960,651,148
(부채와순자산총계)	1,883,896,347	120,272,635	74,192,593	(60,409,670)	2,017,951,905

### <순자산변동표>

(단위: 천원)

과 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계
순자산의 감소	3,249,542	14,107	0	0	3,263,649
재산이관·관리전환 (자산감소)	0	0	0	0	0
양여·기부 (자산감소)	1,000	0	0	0	1,000
기타순자산의 감소	3,249,541	14,107	0	0	3,263,648
기말순자산	1,796,415,861	120,116,284	43,962,653	0	1,960,494,798

## □ 검사 의견

-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총계와 순자산변동표 간 기말순자산액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6,351천원의 차이가 발생함. 순자산변동표의 기타특별회계 기말순자산 금액이 재정상태표상 기타특별회계 순자산총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두 재무제표 간 잔액을 일치시켜야 함.

##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재무제표 간 잔액 일치하도록 수정 조치 하겠음.

## 15 무형자산 계정과목 적정성 여부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 현 황

<무형자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 회계	계
무체재산 (공유재산,무체재산)	2,505,782	0	0	0	2,505,782
전산소프트웨어	1,708,429,232	2,000	0	0	1,708,431,232
건설중인 무형자산	9,898,570	0	0	0	9,898,570
계	1,720,833,584	2,000	0	0	1,720,835,584

-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일반회계에 9,898,570원이 계상되어 있음.

### □ 검사 의견

- 무형자산은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지상권,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개발비 등으로 해당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 재무상태표 주석사항 중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타 비유동자산인 건설중인무형자산의 경우 완도군가족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 계약에 관련된 금액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아닌 건설중인 유형자산으로 보임.
- 건설중인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건물완성 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하여야 할 것 따라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을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의 건설 중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임.

###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건설중인 무형자산을 완공자산으로 수정등록 하겠음.

## 16 장기투자증권과 재정상태 표 간 세부내역 차이 발생

(소관부서 : 세무회계과)

### □ 현 황

#### <재정상태표>

과 목	해당연도(2025년)	해당연도(2024년)	비 고
-종 략-	-	-	
장기투자증권	3,050,000,000	3,050,000,000	증감 없음
기타투자자산(회원권)	333,600,000	333,600,000	증감 없음

#### <재정상태표>

구 분	피투자회사명 또는 발행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공정가액
투자주식	전북주식회사	33	2,950,000,000	2,950,000,000	

### □ 검사 의견

- 재정상태표상 장기투자증권의 금액과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금액 차이가 발생 작년 감사의견에서 나온 해양치유관리공단의 출자금 100,000,000원을 재정상태표에는 반영하였으나 세부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음에 대한 차이로 보임 해당 세부내역 수정이 필요함.

### □ 조치계획

<< 세무회계과 >>

-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금 현황 추가 반영 조치 하겠음.